

[엠바고: 2014. 7. 14.(월), 브리핑(14:00)시부터 보도가능]

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

2014. 7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I.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현황	1
II. 평 가	2
III. 개선 방안	3
1. 인가제도 개선	3
가. 인가·등록 업무단위 개편	3
나. 대주주 관련 요건 합리화	7
다. 기타 규제 정비	8
2. 인가절차 정비	9
3. 인가정책 보완	10
IV. 향후 추진계획	13
【참고1】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 업무단위	14
【참고2】 업무단위 조합 ‘일괄 인가제’ 개요	15
【참고3】 자산운용사 성장경로(안)	16

I.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현황

-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8종으로 분류
 - 투자매매·중개·집합투자·신탁업은 42종의 인가단위 운영
 - 투자자문·일임업의 경우 6종의 등록단위 운영
- 현행 인가·등록 체계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진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
 - 증권사 등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·특화하거나, 업무단위 추가(add-on)를 통해 영업 영역 확장 가능
 - 은행 등 겸업 금융투자업자는 필요한 겸영·부수 업무에 한해 금융투자업 영위

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 업무단위 개황 (→참고1)

업종	금융투자상품	단위	유형
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	▶증권 / 채무증권, 지분증권, 집합투자증권 등	33종	인가 (42종)
	▶장내파생 / 주권기초		
	▶장외파생 / 주권기초, 주권외기초 등		
집합투자업	▶모든 펀드 / 증권, 부동산, 특별자산, 혼합자산	5종	
신탁업	▶모든 신탁재산 / 금전만신탁, 금전제외신탁 등	4종	
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	▶증권·파생·부동산·예치금 / 증권·파생·예치금, 부동산·예치금	6종	등록 (6종)

- 한편, 금융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'금융투자업 인가정책'을 수립·운영

【참고】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

- ▶ 금융투자회사 신설, 업무단위 추가로 인해 시장리스크 증가와 감독상 우려가 크지 않을 것
- ▶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고 투자자 편의를 제고할 것
- ▶ 기존 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시장내 공정경쟁을 촉진할 것

II. 평 가

□ ‘기능별 규율’ 원칙에 따른 **현행 인가제도는 규제차익을 최소화**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권간 **형평성을 제고**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

□ 다만, **전문화·특화**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효과는 **업종별로 차이**

- **자산운용사**의 경우 **전문화·특화사**의 비중이 높아졌으나,
- **증권사**의 경우 **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영업모델로 경쟁**하는 시장구조 하에서 **전문화·특화가 상대적으로 미흡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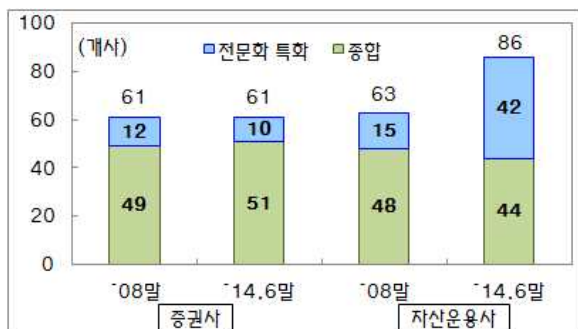
* 전체 자산운용사중 **전문화·특화사** 비중(%) : ('08말)23.8 → ('14.6말)48.8

* 전체 증권사중 **전문화·특화사** 비중(%) : ('08말)19.7 → ('14.6말)16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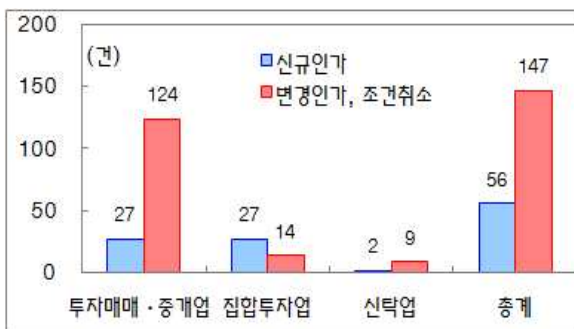
□ 오히려, **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단위, 인가 소요기간(통상 7~8개월), 인가 반납시 재취득의 어려움**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**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**

* '09.2월~'14.6월간 금융투자업 인가중 **신규인가가 아닌 취급상품 범위 변경 인가 등(변경인가·조건취소)**이 전체 인가건수(203건)의 72%(147건)에 이룸

전문화·특화 / 종합 금융투자회사수



신규인가·변경인가 건수('09.2월~'14.6월)



* 신규인가 : 금융투자업 진입시 최초 인가

* 변경인가·조건취소 : 인가단위 추가 등

➔ **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절차를 개선** 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를 **완화**함으로써,

- 금융투자업자의 **전문화·특화** 및 **사업 구조조정을 촉진**할 필요

Ⅲ. 개선 방안

1

인가제도 개선

- ◇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체계를 개편하여 일정 업종 내에서의 취급상품 범위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
- ◇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관련 요건을 합리화하고, 기타 인가 유지 및 폐지 등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
- ⇒ 시장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·특화 및 사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가. 인가·등록 업무단위 개편

(1) 기본 방향

-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 적용
 -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(add-on)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

※ 단,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*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 유지

* 겸영금융투자업자 : 은행, 보험, 외국환중개회사 등

-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, 통합 가능한 인가 업무단위를 통폐합
 - * (투자매매업) 사채인수 업무단위 폐지 → 단위수 △1
 - (집합투자업) 부동산펀드·특별자산펀드 업무단위 통합 → 단위수 △1
-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업무단위별 인가·등록시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 규모를 축소(집합투자업, 투자일임업)

(2) 업종별 개선 방안

투자매매업 · 투자중개업

□ (투자중개업) 신규 진입시 현재와 같이 인가 → 진입 이후, 투자중개업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제로 전환

□ (투자매매업) 상품군(증권, 증권(인수제외), 장내파생, 장외파생)별로 신규 진입시 현재와 같이 인가 → 진입 이후, 상품군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제로 전환

*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업자의 자기계산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만큼,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별로 인가 필요

【예시】 제도개선 효과

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

업종	상품군	금융투자상품 개별 상품	자기자본 (일반투자자 기준)	
투자매매업	
투자중개업	증권	채무증권	10억원	← ①
		지분증권(집합제외)	10억원	← ②
		집합투자증권	10억원	← ③
	장내파생	← ④
	장외파생	← ⑤
집합투자업	

◇ i) 최초 채권 투자중개업만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ii) 이후 지분·집합투자증권 등 여타 증권 투자중개업으로 업무 확대시,

○ (현행) 업무 단위별 추가 인가 필요 → (개선) 등록만으로 가능

현 행	개 선
i) 채무증권 중개업 인가(①)	i) 채무증권 중개업 인가(①)
ii) 업무단위(지분증권, 집합투자증권, 파생 중개업) 확대시 <u>추가인가</u> *(②~⑤)	ii) 업무단위(지분증권, 집합투자증권, 파생 중개업) 확대시 <u>등록</u> *(②~⑤)
* 소요기간 : 최장 2~3년	* 소요기간 : 1년 이내

집합투자업

□ 자산운용업 성장 프로세스와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인가·등록 체계를 재설계

○ 투자자문·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*,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

*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 → 등록은 제도 개선 추진 중('14.4월 입법예고)

○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 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(add-on)할 수 있도록 허용

☞ [등록] 자문·일임업 또는 사모펀드 운용업(종합) →

[인가] 공모펀드(단종 : 증권/실물)* → [등록] 공모펀드(종합)

*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 인가 단위를 통합하여 현행 4단위(증권, 헤지, 부동산, 특자)인 인가 단위를 2단위(증권, 실물)로 대폭 축소

< 현행 >

기준	인가·등록단위	진입규제 (자기자본)
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

자산 운용 업	투자자문 투자일임	등록 (1.5~27억원)
	↓	
	집합투자업	인가 - 증권: 40억원 - 부동산: 20억원 - 특자: 20억원
	단종 (증권, 부동산, 특별자산)	
	↓	
집합투자업	인가 - 혼합: 60억원 - 종합: 80억원	
혼합 (헤지펀드)		종합



< 개선 >

기준	인가·등록단위	진입규제
----	---------	------

자산 운용 업	i)	투자자문 투자일임	등록 (1.5~20억원이하)
		사모 집합투자업 (헤지펀드)	등록 (20억원)
	↓		
	ii)	공모 집합투자업 단종 (증권, 실물)	인가 (40억원)
↓			
	iii)	공모 집합투자업 종합	등록 (80억원)

* 사모펀드운용업의 최저자기자본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최저자기자본 규모도 완화 예정

-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
 - (현행) 증권단종(40억원) → 헤지 add-on(+60억원) → 부동산&특자 add-on(+40억원)을 통해 종합자산운용업 영위 : 총 140억원
 - (개선) 사모(20억원) → 증권단종 add-on(+20억원) → 부동산&특자 add-on(+40억원)을 통해 종합자산업 영위 : 총 80억원(△60억원)

신탁업

- 재산관리 및 보관의 특성, 취급상품의 차별성* 등을 감안할 때 상품간 상호 겸영이 부적절한 만큼 현행 상품단위별 인가를 유지
 - * 예시 :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 신탁업과 1:1 맞춤형 자산관리 목적 금전신탁업의 경우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려움

투자자문업 · 투자일임업

-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등록제로 운영 중 → 현행 유지
 - * 투자자문업·일임업은 '14.5월 현재 총 156개사가 등록중이며 진입·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('13년중 17개사 신규인가, 17개사 자진퇴출)
- 사모펀드운용업의 최저자기자본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최저자기자본 규모도 완화

< 기대 효과 >

◇ 금융투자업 영위시 인가가 필요한 업무단위가 대폭 축소

* ATS투자매매업·중개업 및 장외채권중개 등 독립적 인가단위 제외시, 현행 39개 인가단위가 10개 인가 및 27개 하위 등록단위(2개 폐지)로 변경

◇ 업무단위 추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(현재 7~8개월→2~3개월)

업종	금융투자상품	인가필요 단위
투자매매업	증권	①
	증권(인수제외)	②
	장내파생상품	③
	장외파생상품	④
투자중개업	증권	⑤
	장내파생상품	
	장외파생상품	
집합투자업	-	⑥
신탁업	-	⑦~⑩
ATS투자매매업, ATS투자중개업, 장외채권중개		독립 단위

나. 대주주 관련 요건 합리화

①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(시행령 개정)

- (현행)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 →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작용

* 예시 : 친인척과 계열분리로 인해 상호간 독립경영을 하였으나, 친인척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진출 불가

- (개선)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 공정위에서 확인되는 경우,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

* 은행법 시행령은 계열분리로 인한 특수관계인 배제 조항을 기 반영

②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(감독규정 개정)

- (현행)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'최근 3년간'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→ 금융투자회사 신설, 인수 등의 인가가 제한

- (개선) 기관경고에 한해 동 제한기간을 '최근 1년간'으로 단축

* 금융투자업은 타 금융업과 달리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, 현재의 과도한 경쟁 구조도 해소해 나갈 필요 → 제한기간 단축은 전반적인 인가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

- 시정명령,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 등 상위단계 중제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'최근 3년간' 조건을 유지

다. 기타 규제 정비

① 인가 행정관행으로 운영중인 숙려기간 폐지(숨은규제 개선)

- (현행) 인가절차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6개월간 인가 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운영
- (개선) 법령상 근거가 없는 숙려기간을 폐지

② 인가·등록단위 자진 폐지후 재진입 제한 완화(감독규정 개정)

- (현행) 금융투자회사가 인가·등록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, 해당 업무단위에 대해 5년간 재진입을 제한
 - (개선) 보유중인 인가·등록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·매각하는 경우에만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고,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후 재신청 허용
- * 금융투자회사 매각후 신규진입 신청 등 '인가쇼핑'에 대한 재인가 제한은 유지하되, 금융투자업자의 자발적 사업구조조정 및 전문화·특화 지원

【참고】 인가단위 자진폐지시 5년간 진입금지 제한 관련

- ▶ (규제목적) '인가쇼핑'으로 인한 인가 남발, 무분별한 영업폐지 등 방지
- ▶ (평가) 대주주가 금융투자회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유형의 '인가쇼핑'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반면, 금융투자업자가 미영위 업무 단위도 계속 보유하도록 하여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

③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·등록 최저 자기자본 미달시 인가·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단축(시행령 개정)

- * (현행) 특정 회계연도말 기준 인가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유예 → (개선)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

◇ 인가 소요기간 단축, 세부 가이드라인 공개, 인가서류 간소화 등 인가절차 정비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부담 경감

① 인가→등록제 전환 예정인 상품 관련 업무단위 추가(add-on)에 대해서는 “Fast-track 인가” 시행

※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(add-on)는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나, 관련 법령 개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⇒ 신속히 인가받을 수 있는 Fast-track 절차를 마련하여 법령 개정전까지 운용

- (현행) 취급 상품이나 영업대상 투자자 추가시에도 금감원 심사 → 증선위 심의 → 금융위 예비·본인가 등 중층적 심사를 거침
- (개선) 취급 상품 추가 등 ‘변경 인가’ 신청시에는 등록제에 준하는 신속한 인가절차 운영

* 예비인가 생략 등을 통해 신청후 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: (현행) 7~8개월 → (개선) 3~4개월

② 인가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 공표

- (현행)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심가요건별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
- (개선)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심사 기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공표

* 전문인력 최소기준, 물적설비 점검사항, 사업계획 작성방식 등 포함

③ 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

- (현행)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다양한 서류(약 20종)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 발생
- (개선) 중복서류 제출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

- ◇ 現 인가정책 기조를 유지하되, 업종·업권별로 일부 조정·보완
- (투자매매업·중개업)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 단위를 묶어 “일괄 인가제” 시행
 - (집합투자업) 자산운용사의 사업모델과 성장경로를 감안하여 “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” 마련·시행

(1) 기본 방향

- ① 시장규모에 비하여 금융투자회사 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현행 인가정책 기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,
 - 업종별 영업특성과 사업모델 등을 감안하여 인가정책 일부 보완
- ② 인가정책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(예 : 매년 1/4분기중)으로 ‘인가정책 방향’을 공표

<참고> 現 금융투자업 인가정책 주요 내용

구 분	주요 사항
전업금융투자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화·특화 금융투자회사 신설 신청을 중심으로 심사 · 리스크 증가 소지,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, 투자자 편의 제고 등을 감안하여 심사 · 동일그룹내 전문화·특화 복수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
· 증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내 업무 추가 허용 · 신탁업 추가 허용
· 선물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권 매매업·중개업 추가 허용 · 장외파생상품 매매업(제한적 허용)
· 자산운용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권펀드 운용사 진입 제한적 허용 · 부동산 운용사 진입 제한적 허용
겸영금융투자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 등 추가 허용

(2) 업종·업권별 보완 방안

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

-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단위 조합의 '일괄 인가제(모듈형 인가제)' 시행 (→참고2)
 - (현행) 1~2개 업무단위를 인가받아 금융투자업에 진입
 - 그러나, 취급상품이 제한되고 원활한 영업이 곤란하여 추가 인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
 - (개선) 상호연관된 업무단위 조합(모듈) 별로 일괄 인가 실시
 - * 모듈 : 상호관련성이 높아 함께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가·등록단위 조합
- M&A 추진 증권사에 대하여 사모펀드 운용업과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 영위를 허용('13.12월, 「증권회사 M&A 촉진방안」)
 - * 개인연금신탁 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&A에 한해 한시 허용

집합투자업

-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 마련 및 공표 (→참고3)
 - (현행) 자산운용사 성장 단계별 add-on 인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사업 진출이 제약
 - (개선) 자산운용사 사업 모델을 기준으로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을 마련
 - 증권펀드 운용사 경로, 실물펀드 운용사 경로, 자문·헤지펀드 운용사 경로 등 3가지 경로별 인가 기준 공표
 - 인가 기준은 업력, 수탁고*를 기준으로 하되, 공모펀드 진출시에는 필요시 금감원 검사**를 거쳐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점검 후 인가
 - * 싱가포르도 자산운용사의 단계별 인가 기준으로 업력, 수탁고, 평판 등을 활용
 - ** 인가 신청 전 1년내 검사를 받은 경우 추가 검사 필요 없음

겸영 금융투자업자

- (보험)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의 금전신탁 겸영 허용

선물업자

- 선물사의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를 확대
 - (현행) 상품(commodity)에 한정된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
 - (개선) 상품 뿐만 아니라, 통화·이자율·신용 기초 장외 파생거래 중개도 허용

◇ 아울러, 금융투자업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 제공

- ① 인가 신청시 '신규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*'을 필수 제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인가후 6개월내 보고토록 의무화

* 인력확보, 사업계획상 인력 양성계획 등 심사과정에서 검토

- ②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평가되는 신청건은 우선적으로 심사

IV. 향후 추진계획

추진과제	필요조치	추진일정	소관
① 인가제도 개선			
· 인가·등록 업무단위 개편	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	'14.하반기	금융위
·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'14.하반기	금융위
·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	금융투자업규정 개정	'14.하반기	금융위
· 숙려기간 폐지	행정조치	'14.9월	금감원
· 자진폐지후 재진입 제한 완화	금융투자업규정 개정	'14.하반기	금융위
· 인가·등록 취소 유예기간 단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'14.하반기	금융위
② 인가절차 정비			
· Fast-track 인가 시행	행정조치	'14.9월	금융위·금감원
· 인가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 공표	가이드라인 공표	'14.9월	금감원
· 인가시 제출 서류 간소화	행정조치	'14.9월	금감원
③ 인가정책 보완			
· 투자매매·중개업 '일괄인가제' 시행	인가정책 조정	'14.9월	금융위·금감원
· 경영금융투자업자 인가범위 확대	인가정책 조정	'14.하반기	금융위·금감원
· 선물사 투자중개업 업무범위 확대	인가정책 조정	'14.9월	금융위·금감원
· 일자리 창출 관련 인센티브 제공	인가정책 조정	'14.9월	금융위·금감원

참고1

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 업무단위

연번	금융투자업 종류	금융투자상품 범위	투자자	자기 자본	체계개편후 인가필요단위		
1	투자매매업	증권	일반+전문	500	①		
2			채무증권	일반+전문		200	
3			국공채	일반+전문		75	
4			지분(집합제외)	일반+전문		250	
5			집합투자증권	일반+전문		50	
6		증권(인수제외)	증권(인수제외)	일반+전문	200	②	
7				채무증권	일반+전문		80
8				국공채	일반+전문		30
9				사채	일반+전문		40
10				지분(집합제외)	일반+전문		100
11			집합투자증권	일반+전문	20		
12			RP대상증권	일반+전문	60		
13			증권(인수만)	채무증권 사채	일반+전문		60
14	투자매매업 (ATS)	장내파생	일반+전문	100	③		
15			주권기초	일반+전문		50	
16		장외파생	일반+전문	900	④		
17			주권기초	일반+전문		450	
18			주권외기초	일반+전문		450	
19			통화·이자율기초	일반+전문		180	
20			투자매매업 (ATS)	전문		300	⑤
21		투자중개업 (RP중개)	증권 (증권)	일반+전문	30	⑥	
22				전문	5		
23	채무증권			일반+전문	10		
24	지분(집합제외)			일반+전문	10		
25	집합투자증권			일반+전문	10		
26	장내파생		일반+전문	20			
27			주권기초	일반+전문	10		
28	장외파생		일반+전문	100			
29			주권기초	일반+전문	50		
30			주권외기초	일반+전문	50		
31			통화·이자율기초	일반+전문	20		
32	투자중개업 (ATS)	전문	200	⑦			
33	투자중개업 (장외채권중개)	증권	채무증권	전문	30	⑧	
34	집합투자업	모든펀드	일반+전문	80	통합 ⑨		
35			증권펀드(MMF포함)	일반+전문		40	
36			부동산펀드	일반+전문		20	
37			특별자산펀드	일반+전문		20	
38			혼합자산펀드	일반+전문		60	
39	신탁업	모든 신탁재산	일반+전문	250	⑩		
40			금전만신탁	일반+전문	130	⑪	
41			금전제외신탁	일반+전문	120	⑫	
42			부동산신탁	일반+전문	100	⑬	
43	투자자문업	증권, 파생상품, 부동산, 예치금	일반+전문	8			
44			증권, 파생상품, 예치금	일반+전문		5	
45			부동산, 예치금	일반+전문		3	
46	투자일임업	증권, 파생상품, 부동산, 예치금	일반+전문	27			
47			증권, 파생상품, 예치금	일반+전문		15	
48			부동산, 예치금	일반+전문		12	

* 현재 1~42번 단위는 '인가제', 43~48번 단위는 "등록제"로 운영 중

* 체계 개편후 : 인가필요 업무단위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 전환

참고2

업무단위 조합 '일괄 인가제'(모듈형 인가제) 개요

① 업무단위 조합(모듈, Module)의 개념

- 상호 연관성이 높아 함께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가·등록 업무 단위의 조합

② 업무단위 조합 일괄인가제

-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신규 인가시, 상호 연관된 업무단위 조합을 일괄적으로 인가

③ 업무단위 조합 (예시)

- 사업 전문화·특화

업무 성격	인가·등록 업무단위		최소 필요자본
	필수	선택가능	
①중개업(Brokerag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중개(증권) · 투자중개(장내파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자문 · 투자일임 	50억원
②소형 자산관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①의 업무단위 · 투자매매 (증권, 인수제외) · 투자매매(장내파생) 	-	350억원
③전통적 IB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①, ②의 업무단위 · 투자매매 (증권, 인수포함) · 장외파생 매매·중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집합투자업(사모) 	1,650억원

- 상품별 전문화·특화

업무 성격	인가·등록 업무단위		최소 필요자본
	필수	선택가능	
①주식 매매·중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중개(주식) · 투자매매(주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자문(주식) · 투자일임(주식) 	110억원
②장내파생 매매·중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중개(장내파생) · 투자매매(장내파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자문(파생) · 투자일임(파생) 	120억원

참고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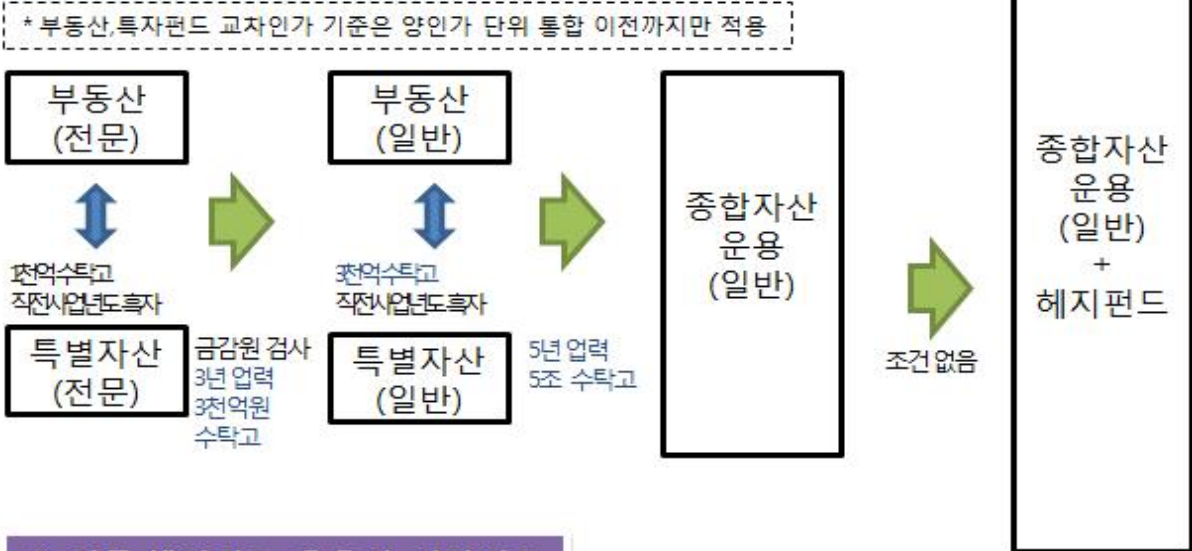
자산운용사 성장경로(안)

- ◇ 사업 초기 기관투자자의 수탁금 없이 자생하기 어려운 영업 모델 감안시, 원스톱(One-stop)인가 보다는 특정 분야에서의 운용 평판을 쌓은 후 단계적으로 인가를 확대하는 **성장형 인가 모델**이 바람직

1. 증권펀드 운용사 성장경로



2. 실물펀드 운용사 성장경로



3. 자문.헤지펀드 운용사 성장경로



*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운용업 등록 단위 신설시 새로운 단계별 성장경로 마련